

물질안전보건자료

노동부고시 제 2016-19 호 에 의거

최종 개정일자 : 2023 년 9 월 26 일

이전 호 발행일 : 2019 년 5 월 23 일

MSDS 번호 : 472A-2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1. 제품명

ARC S5 (파트 A) (LTGY, MDGY)

1.2.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 ARC S5(파트 A)와 혼합하여, 고온 적용을 위하여 준비된 표면위에 박막 코팅으로 사용된다.

사용상의 제한 : 가용한 정보 없음

1.3. 안전 보건 자료의 공급자 세부 사항

회사 :

공급자 :

A.W. CHESTERTON COMPANY

860 Salem Street

Groveland, MA 01834-1507, USA

전화 : +1 978-469-6446 팩스 : +1 978-469-6785

(월- 금요일 오전 8:30 - 오후 5:00 미국동부시간)

MSDS 요청 : www.chesterton.com

이메일(MSDS 문의) : ProductSDSs@chesterton.com

이메일 : customer.service@chesterton.com

1.4. 긴급전화번호

1 주 7 일, 1 일 24 시간

Infotrac 번호 : 1-800-535-5053

북미 외부 : +1 352-323-3500 (수신자 부담)

2. 유해성·위험성

2.1. 유해성, 위험성 분류

2.1.1. GHS 에 의한 분류

피부 자극성, 구분 2, H315

피부 과민성, 구분 1, H317

심한 눈 손상성, 구분 1, H318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구분 2, H411

2.1.2. 추가 정보

H-진술서의 전문: 2.2 절 및 16 절 참조.

2.2.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GHS 에 대한 레이블 표시

유해성 그림 :



신호어 : 위험

유해위험 문구 : H318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411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예방조치 문구 : P261 미스트·증기 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P264 취급 후 피부를 철저히 씻는다.
 P272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P302/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로 씻으시오.
 P305/351/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 계속 씻으시오.
 P310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33/313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십시오.
 P362/364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십시오.
 P391 누출물을 모으시오.
 P501 내용물/용기는 승인 받은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폐기한다.

보조 정보 : 없음

2.3. 기타 위험

안전 및 건강 위험은 파트 별로 상세히 설명된다. 최종 경화 물질은 비위험으로 간주한다. 기계가공 시, 파트 A 및 파트 B 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있는 사전주의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2. 혼합물

| 유해 성분 ¹ | 중량 % | CAS 번호 |
|-------------------------|---------|-------------|
| 에폭시 수지(수 평균 분자량 <= 700) | 25-35 | 9003-36-5 * |
| 글리시딜옥시프로필트라이메톡시실란 | 5-10 | 2530-83-8 |
|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 0.1-0.5 | 108-65-6 |

기타 성분들:

| | | |
|----------|-------|------------|
| 탄산 칼슘 | 10-20 | 1317-65-3 |
| 산화 알루미늄 | 10-20 | 1344-28-1 |
| 실리카 (석영) | 1-3 | 14808-60-7 |
| 이산화 티탄 | 1-3 | 13463-67-7 |

*대체 CAS No: 28064-14-4. **작업장 노출 한도가 있는 물질.

^a 공기역학적 직경이 10µm 이하인 입자가 1% 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H-진술서의 전문: 16 절 참조.

¹분류 기준 : * 노동부고시 제 2016-19 호

4. 응급조치 요령

4.1. 응급조치의 설명

- 흡입했을 때 : 신선한 공기로 옮긴다. 숨을 쉬지 않으면, 인공 호흡을 실시한다. 의사에게 연락한다.
-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오염된 의복을 제거한다. 비누와 물로 피부를 세척한다. 자극이 지속되면 의사에게 연락한다.
- 눈에 들어갔을 때 : 다량의 물로 15 분 이상 눈을 닦아낸다. 자극이 지속되면 의사에게 연락한다.
- 먹었을 때 : 구토를 유도하지 않는다. 의사에게 즉시 연락한다.
- 응급 처치자 보호 : 어떤 개인적 위험이 관련되거나 또는 적절한 교육없이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면서 제품에 접촉을 피한다. 분진·증기·스프레이 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개인 보호 장비의 추천에 관하여 섹션 8.2.2 을 참고.

4.2. 가장 중요한 증상 및 영향, 급성 및 지연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발진이나 두드러기로 나타나는 피부 감작을 초래할 수 있다. 가열 및 살포로 인한 높은 증기 농도와 직접 접촉은 눈과 호흡관 자극을 초래할 수 있다.

4.3. 즉각적인 치료 및 특별 치료를 요하는 내용

증상을 치료한다.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5.1. 소화제

적절한 소화제 : 이산화탄소, 건조 케미칼, 거품 또는 물 포그

부적절한 소화제 : 알려진 것이 없음

5.2.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유해한 연소 생성물 : 일산화탄소, 일데히드, 실리콘 산화물 및 기타 독성 연무.

기타 위험: 없음

5.3. 소방수를 위한 조언

노출된 용기를 물로 식힌다. 소방수의 자급식 호흡 보호구의 착용을 권장한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6.1.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피부 접촉을 피한다 섹션 8 에서 명시된 바와 같은 노출 통제 및 개인 보호를 활용한다.

6.2.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하수구나 개울 또는 수로로부터 멀리한다.

6.3.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떠서 적절한 폐기용 용기로 옮긴다.

6.4. 다른 섹션에 대한 참고

폐기 관련 조언은 섹션 13 을 참조한다.

7. 취급 및 저장방법

7.1. 안전취급요령

섹션 8에서 명시된 바와 같은 노출 통제 및 개인 보호를 활용한다. 취급 후 철저히 세척한다. 오염된 의복을 즉시 제거한다 의류는 다시 사용전 세탁한다. 구두를 포함한 오염된 가족은 오염제거가 안됨으로 폐기한다. 제거, 드릴링, 천공, 절단 및 사포 시 분진을 만들거나 호흡을 피한다.

7.2. 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한다.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7.3. 구체적인 최종 용도(들)

특별한 사전 주의사항 없음.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8.1.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 유해 성분 | 노출기준 ¹ | | ACGIH TLV ² | |
|-------------------------|-------------------|-------------------|------------------------|--------------------|
| | ppm | mg/m ³ | ppm | mg/m ³ |
| 에폭시 수지(수 평균 분자량 <= 70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글리시딜옥시프로필트라이메톡시실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탄산 칼슘 | 해당 없음 | 10 | ** | 10 (흡입) 3 (호흡성) |
| 산화 알루미늄 | 해당 없음 | 10 | (호흡성) | 1 |
| 실리카 (석영) | (호흡성) | 0.05 | (호흡성) | 0.025 |
| 이산화 티탄 | 해당 없음 | 10 | 해당 없음 | 10 |

*추천된 노출 한계: 0.5 ppm (8 시간 TWA)

**미 규정 미립자(PNOS)

¹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용노동부

²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미국 정부 산업 위생사 협회)

생물적 한계 값

성분에 대한 생물학적 노출 한도 없음

8.2. 노출 통제

8.2.1. 공학적 대책

증기 농도를 노출 한도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충분한 환기를 제공한다. 필요하다면 국소 배기를 제공한다. 본진이 생성될 정도로 최종 경화 생성물의 변조가 필요한 경우, 충분한 분진 추출 또는 감소를 실행한다.

8.2.2. 개인 보호 대책

호흡기 보호 :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 적절한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한다 (예: 먼지/유기 증기 필터가 결합된 반쪽 또는 전면형 호흡보호구). 제공된 공기호흡기가 통제되지 않거나, 노출 수준이 알려지지 않거나 또는 공기 정화 호흡기가 적절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압을 사용.

보호 장갑 : 화학적 내성의 장갑 (예: 니트릴 고무, 부틸 고무, 네오프렌, PVC)

눈과 안면 보호 : 보안경이 아래에 있는 풀 안면 실드.

기타 : 피부 접촉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비침습성 의복.

8.2.3. 환경 노출 통제

6 절 및 12 절을 참조.

9. 물리화학적 특성

9.1 기본적 물리화학적 특징에 관한 정보

| | | | |
|--------------------|--------------|-----------------------|--------------------|
| 물리적 상태 | 페이스트 | pH | 해당 없음 |
| 색 | 밝은 회색, 중간 회색 | 동점도 | 383,000 cSt @ 25°C |
| 냄새 | 달콤한 냄새 | 물의 용해도 | 약간 가용성 |
| 냄새 역치 | 결정되지 않음 | 분배 계수: n-옥탄올/물 (로그 값) | 해당 없음 |
|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결정되지 않음 | 증기압 @ 20°C | 결정되지 않음 |
| 녹는점/어는점 | 결정되지 않음 | 비중 | 1.83 kg/l |
| 휘발 성분 % (부피 당) | 없음 | 증기밀도(air=1) | > 1 |
| 인화성 | 결정되지 않음 | 증발 속도(ether=1) | < 1 |
|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결정되지 않음 | 방향족 성분 %(무게 당) | 없음 |
| 인화점 | 122°C | 폭발 특성 | 결정되지 않음 |
| 방법 | 성분 데이터 | 산화 성질 | 결정되지 않음 |
| 자연발화 온도 | 결정되지 않음 | 분해 온도 | 결정되지 않음 |

9.2. 그 밖의 참고사항

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10.1. 반응성

10.3 절 및 10.5 절을 참조.

10.2. 화학적 안정성

안정함

10.3. 유해 반응의 가능성

정상 사용 조건 하에서 알려진 위험 반응은 없음.

10.4. 피해야 할 조건

노출된 화염 및 고온.

10.5. 피해야 할 물질 :

강산과 염기 및 액체 연소와 농축 산소와 같은 강산화제들.

10.6.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일산화탄소와 알데히드 및 기타 독성 연무. 150°C 이상의 온도에서 포름알데히드를 발생할 수 있음 물이나 습한 공기에서 가수분해되어 에탄올 및 유기 규소를 방출한다.

11. 독성에 관한 정보

11.1. 독극물 영향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흡입, 피부 및 눈 접촉. 이미 존재하는 피부나 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노출에 의해 악화될 것이다.

급성 독성 -

경구: 구성요소에 대해 가용한 데이터에 의하면,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 물질 | 시험 | 결과 |
|-------------------------|---------|----------------|
| 에폭시 수지(수 평균 분자량 <= 700) | LD50, 쥐 | > 5,000 mg/kg |
| 탄산 칼슘 | LD50, 쥐 | > 2,000 mg/kg |
| 산화 알루미늄 | LD50, 쥐 | > 5,000 mg/kg |
| 글리시딜옥시프로필트라이메톡시 실란 | LD50, 쥐 | 7.5 ml/kg |
| 이산화 티탄 | LD50, 쥐 | > 10,000 mg/kg |

경피: 구성요소에 대해 가용한 데이터에 의하면,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 물질 | 시험 | 결과 |
|-------------------------|----------|----------------|
| 에폭시 수지(수 평균 분자량 <= 700) | LC50, 토끼 | > 3,000 mg/kg |
| 탄산 칼슘 | LD50, 쥐 | > 2,000 mg/kg |
| 글리시딜옥시프로필트라이메톡시 실란 | LD50, 토끼 | 3.97 ml/kg |
| 이산화 티탄 | LC50, 토끼 | > 10,000 mg/kg |

흡입 : 가열 및 살포로 인한 높은 증기 농도와 직접 접촉은 눈과 호흡관 자극을 초래할 수 있다.

| 물질 | 시험 | 결과 |
|-------------------------|---------------------|------------------------|
| 에폭시 수지(수 평균 분자량 <= 700) | LC50, 쥐 | > 1.7 mg/l/4 시간 (에어로솔) |
| 탄산 칼슘 | LD50, 쥐 | > 3 mg/l (분진) |
| 글리시딜옥시프로필트라이메톡시 실란 | LC50, 쥐, 4 시간, 에어로솔 | > 5.3 mg/L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물질 | 시험 | 결과 |
|-------------------------|-----------|------------------|
| 에폭시 수지(수 평균 분자량 <= 700) | 피부 자극, 토끼 | 경미한 자극/중간 정도의 자극 |
| 글리시딜옥시프로필트라이메톡시 실란 | 피부 자극, 토끼 | 경미한 자극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 물질 | 시험 | 결과 |
|-------------------------|----------|---------|
| 에폭시 수지(수 평균 분자량 <= 700) | 눈 자극, 토끼 | 약간의 자극성 |
| 글리시딜옥시프로필트라이메톡시 실란 | 눈 자극, 토끼 | 각막 부상 |

호흡기/피부 과민성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 물질 | 시험 | 결과 |
|-------------------------|----------------------|------|
| 에폭시 수지(수 평균 분자량 <= 700) | 피부 과민성, 기니피그 | 과민성 |
| 글리시딜옥시프로필트라이메톡시 실란 | 인간 반복 접포 테스트 (HRIPT) | 비과민성 |
| 글리시딜옥시프로필트라이메톡시 실란 | 피부 과민성, 기니피그 | 비과민성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에폭시 수지(수 평균 분자량 <= 700), 글리시딜옥시프로필트라이메톡시실란: 얻을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면,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발암성 : 국제 암 연구소(IARC) 및 미국 독극물학 프로그램(NTP)에서는 흡입된 실리카를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IARC에서는 흡입된 이산화 티탄을 가능한 인체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그룹 2B). 본 제품내의 실리카 및 이산화 티탄은 혼합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며 또한 공기중 부유성이 되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사용시 유해성이 없음.

생식독성 : 에폭시 수지(수 평균 분자량 <= 700), 글리시딜옥시프로필트라이메톡시실란: 얻을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면,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에폭시 수지(수 평균 분자량 <= 700), 글리시딜옥시프로필트라이메톡시실란: 얻을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면,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에폭시 수지(수 평균 분자량 <= 700), 글리시딜옥시프로필트라이메톡시실란: 얻을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면,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흡입가능한 자유 실리카의 반복적 흡입은 기침에 의한 폐의 상처와 숨가쁨을 초래할 수 있다. 규폐증, 지연성 폐 장애를 가져오는 상처 및 점진적이고 어떤 때는 치명적인 폐섬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 물질 | 시험 | 결과 |
|-------------------------|---|-----------|
| 에폭시 수지(수 평균 분자량 <= 700) | 아 만성 NOAEL, 구강, 90 일, 쥐, 수 / 암 (OECD 408) | 250 mg/kg |

흡인 유해성 : 얻을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면,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11.2. 기타 정보

알려진 것이 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생태 자료는 결정되지 않았음. 아래 주어진 정보는 유사한 물질들의 성분 및 환경 독성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것임.

12.1. 생태독성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가장 민감한 종에서 LC50/EC50 은 1 과 10 mg/L 사이임, 유사 물질에 의한 자료에 근거하여.

12.2. 잔류성 및 분해성

부적절하게 환경으로 방출된, 미 반응된 성분(파트 A 및 B)은 지표수와 물의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에폭시 수지: 즉시 생물분해 가능하지 않음. 글리시딜옥시프로필트라이메톡시실란: 물이나 습한 공기에서 가수분해되어 에탄올 및 유기 규소를 방출한다.

12.3. 생물 농축성

에폭시 수지: 생물축적 가능성을 가진다. 글리시딜옥시프로필트라이메톡시실란: 생물축적에 대한 낮은 가능성.

12.4. 토양 이동성

점성 액체. 약간의 수용성. 환경적 이동성의 결정에 있어서, 그 제품의 물리적 및 화학적 성상을 고려한다(섹션 9 참고). 에폭시 수지: 제품이 토양에 침투하면, 이동성이 되며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

| |
|--|
| <p>12.5. PBT 및 vPvB 평가의 결과</p> <p>해당 없음</p> <p>12.6. 기타 유해 영향</p> <p>알려진 것이 없음</p> |
| <p>13. 폐기시 주의사항</p> |
| <p>13.1. 폐기방법</p> <p>수지 및 경화제를 조합한다. 최종 경화 물질은 비위험으로 간주한다. 미반응 성분들은 특성 폐기물임. 액체 형태의 폐기 생성물은 적절한 면허가 있는 시설에서 소각한다. 비경화 제품은 2008/98/EC 에 따라서 유해 폐기물로 분류된다. 현지와 주 및 국가/연방 법규를 확인하여 가장 엄격한 요구조건을 준수한다.</p> |
| <p>14. 운송에 필요한 정보</p> |
| <p>14.1. 유엔 번호</p> <p>ADR/RID/ADN/IMDG/ICAO : UN3082</p> <p>14.2. 유엔 적정 선적명</p> <p>ADR/RID/ADN/IMDG/ICAO : 환경 유해 물질, 액체, N.O.S. (에폭시 수지)</p> <p>14.3.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p> <p>ADR/RID/ADN/IMDG/ICAO : 9</p> <p>14.4. 용기등급</p> <p>ADR/RID/ADN/IMDG/ICAO : III</p> <p>14.5. 환경 위험</p> <p>해양 오염물</p> <p>14.6. 사용자를 위한 특별 주의사항</p> <p>사용자를 위한 특별한 사전주의 없음</p> <p>14.7. MARPOL73/78 부록 II 및 IBC 부호에 의한 벌크 운송</p> <p>해당 없음</p> <p>14.8. 그 밖의 참고사항</p> <p>IMDG : EMS, F-A, S-F</p> <p>5L 이하의 단일 또는 내부 포장당 순 수량을 포함하는 단일 또는 복합 포장으로 제한 없이 배송될 수 있습니다. (IMDG 코드 수정 37-14, 2.10.2.7)</p> <p>ICAO/IATA : 5L 이하의 단일 또는 내부 포장당 순 수량을 포함하는 단일 또는 복합 포장으로 제한 없이 배송될 수 있습니다. (IATA 위험물 규정 56 판, 4.4 특별 조항 A197)</p> <p>ADR : 분류 코드 M6 터널 제한 코드 (E)</p> <p>5L 이하의 단일 또는 내부 포장당 순 수량을 포함하는 단일 또는 복합 포장으로 제한 없이 배송될 수 있습니다. (ADR 2015 1 권, 3.3 장 특별 조항 375)</p> |

15. 법적 규제현황

15.1. 물질 혼합물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보건 및 환경 규제/입법 내용

15.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노출기준설정물질 : 섹션 8.1 참고.

관리대상유해물질 : 산화 알루미늄 , 이산화 티탄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산화 알루미늄 (6 개월), 실리카 (석영), 이산화 티탄 (6 개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탄산 칼슘 (광물성 분진), 산화 알루미늄 (12 개월), 실리카 (석영) (24 개월)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15.1.2.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한국의 기존 화학물질목록 : 모든 성분은 목록에 실렸거나 면제됨.

15.1.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4 류 제 2 석유류(비수용성액체) 1000ℓ

15.1.4.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 폐기물 : 산화 알루미늄, 실리카 (석영)

15.1.5.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 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약어 모음 : ACGIH : 미국 정부 산업 위생사 협회
 ADN : 위험 물품의 국제적 내륙 및 수상 운송에 관한 유럽 협약
 ADR : 위험 물품의 국제적 육로 운송에 관한 유럽 협약
 ATE : 급성독성 추정값
 cATpE : 평가 지점 독성도 급성 변환된(Converted Acute Toxicity point Estimate)
 CLP : 분류, 레이블 표기, 포장 규제(1272/2008/EC)
 GHS : 세계조화시스템
 ICAO : 국제 민간 항공 기구
 IMDG : 위험 물질의 해외 해상 운송
 LC50 : 시험 집단의 50%에 대한 치사 농도
 LD50 : 시험 집단의 50%에 대한 치사 용량
 LOEL : 최저 관찰 효과 수준
 N/A : 해당 없음
 NA : 없음
 NOEC : 무영향 관찰 농도
 NOEL : 비관찰 효과 수준
 PBT : 지속성, 생물축적성 및 독성 물질
 REACH :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지정 및 제한
 RID : 위험 물품의 해외 철도 운송에 관한 규제
 MSDS : 물질 안전 보건 자료
 STEL : 단기 노출 한도
 STOT RE : 특정 대상 기관 독성, 반복 노출
 STOT SE : 특정 대상 기관 독성, 1 회 노출
 TLV : 임계 한도값
 vPvB : 매우 지속적이며 생물축적이 매우 높은 물질
 기타 약어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음 : www.wikipedia.org.

자료의 주요 참조문헌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및 출처 : 국립 기술 및 평가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NITE))
 유럽 화학물질 기관(ECHA) - 화학물질에 필요한 정보
 미국의학국립도서관 Toxicology Data Network (독물학 데이터망 : TOXNET)
 유해 물질 정보 체계(HCIS)
 화학 분류 및 정보 데이터베이스(Chemical Classification and Information Database (CCID))

GHS에 의한 혼합물 분류에 사용된 절차 :

| 분류 | 분류 절차 |
|---------------|-------|
| 피부자극 2, H315 | 계산 방법 |
| 피부과민성 1, H317 | 계산 방법 |
| 눈 손상 1, H318 | 계산 방법 |
| 수생 만성 2, H411 | 계산 방법 |

관련 H-진술문 : H226: 인화성 액체 및 증기.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18: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H336: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H411: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추가 정보 : 없음

최초 작성일자 : 2023년 9월 26일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 2023년 9월 26일

본 개정판에서 MSDS에 대한 변경 내용 : 섹션들 1.1, 1.2, 1.3, 1.4, 2.2, 3.2, 4.2, 5.2, 8.1, 9.1, 11, 12.6, 15.1, 16.

이 정보는 혼합물 자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용된 재질들의 공급자들이 제공한 자료에만 전적으로 기준했다. 사용자의 특정 목적을 위한 제품의 적합성에 대하여 어떠한 명시적이거나 함축적인 보증이 없다. 사용자는 적합성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